

憲法學 30年の 回顧와 展望

文 鴻 柱*

一. 序

1948年 8月 15日에 선포된 大韓民國憲法은 우리 民族이 가진 近代立憲主義憲法의 始初이며, 더구나 그것은 日帝에서 獨立하여 가진 近代憲法이다.

우리가 1948년에 獨立國家로서의 近代憲法을 가지기 전에는 世界에서도 그 例를 볼 수 없는 絶對天皇主權下에서, 더구나 日本本土보다도 더욱 自治와 人權이 抹殺된 狀態下에서 우리는 35년이란 긴 植民地生活을 해 왔다. 이 植民地時代에서는 우리 民族으로서 日本憲法에 관심을 가질 수도 없고 또 韓國人의 學者의 길도 封鎖되어 있었다.

이런 環境속에서 公法에 관심을 가진 분은 오직 兪鎮午 博士뿐이었으며 그의 卓越한 才能에도 不拘하고 母校인 京城帝國大學(현 서울大 前身)에서의 敎員의 길은 막혔으며, 지금의 高麗大學校의 前身인 普成專門學校에서 公法分野를 擔當하고 있었다. 우리나라가 解放이 되자 憲法에 조예가 있는 분은 오로지 兪鎮午 博士뿐이었다. 그러나 그 분도 日本帝國主義憲法에 관심이 있을 수 없었고 그렇다고해서 그 당시부터 民主憲法에 관한 講義는 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憲法學은 바로 1948年の 大韓民國憲法 發布와 함께 시작되었다고 보는 것이 正論이다. 이 點이 民·刑·商法 等에 있어서 學者로서는 아니지만 그래도 다소 研究한 業績이 있는 分野와 比較해서 公法分野에 있어서 다른 점이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나라 憲法이 制定된지 30年동안 憲法史에 있어서 變遷이 너무나 컸다. 1948년에 最初의 憲法이 制定되었고, 이것을 우리는 第1共和國憲法이라고 부른다. 第1共和國憲法은 2次에 걸쳐 部分的 改正이 있었고, 그 후 1960년에 가서 全面改正되어 第2共和國憲法이 制定되었고, 이것도 1次의 部分的 改正을 거쳐 1962년에 全面改正되어 第3共和國憲法의 制定을 보았다. 이 第3共和國憲法도 1次의 部分的 改正을 거쳐 1972년에 다시 全面改正되어 第4共和國憲法의 制定을 보게 되었다.

이와같이 우리 憲法이 30年間に 4次의 全面改正이란 運命을 가져왔는데, 그 內容이 그때 그때의 政治現實과 關聯되어 많은 差異點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憲法學의 30年을 回顧하는 데 있어서 憲法自體의 變遷을 도외시하고는 論할 수 없게 되어있다. 30年間 變하지

*成均館大學校 敎授

않는 憲法을 가졌다면 그 憲法밑에서의 憲法學의 發展을 條理있게 學問적으로 論할 수가 있겠으나 우리는 그동안 數次的 政變으로 相異한 憲法을 가지게 되었으므로 憲法史와 憲法學은 다른나라에서 볼 수 없는 特異한 關係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하여 여기에 憲法學 30年을 論하는 데 있어서 憲法史 自體的 觀察이 불가피하게 되어있다.

二. 憲法學의 回顧

1. 軍政時代의 憲法的 論爭

第1共和國憲法이 제정되기 直前に 우리 憲法學界에서 論難의 對象이 된 문제가 있었다. 軍政時代에는 軍政長官布告에 위반되지 않는 既存 日本法令은 그대로 効力을 가지고 있었다. 妻가 男便의 同意없이 아내의 財產에 대하여 家屋明渡請求訴訟이提起되어 勝訴하였는데 敗訴한 被告가 이것은 日本民法 14條(妻는 男便의 同意없이 訴訟을 提起할 수 없다는 內容)에 위반한다 하여 大法院에 非약上告를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大法院은 日本民法 14條가 實質的 憲法에 위반된다하여 上告를 기각하였다. 軍政時代의 우리나라는 앞으로 國際적으로 獨立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¹⁾ 完全한 獨立國家는 아니라도 生成中の 國家라고 볼 수 있으며, 生成中の 國家에도 實質的 憲法은 있는 것이며, 그 當時 實質的 憲法에 民主主義가 있고 그 內容의 하나로서 男女平等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日本民法 14條는 妻의 無能力制度를 規定하고 있으므로 男女平等이란 實質的 憲法에 위반된다고 하였다.

이 大法院의 判決에 대하여 贊反兩論이 있었는데, 그 反對論의 主眼點은 生成中の 國家의 實質的 憲法이란 理論에 疑問을 표시했으며, 또 一步 양보하여 男女平等이란 實質的 憲法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違憲法律審査를 美國의 例에 따라 憲法規定에 없는 條도 불구하고 大法院이 과연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點이었다. 그러나 이런 論爭속에 憲法이 제정되어 그 8條에 性別의 差別을 금지하는 條項을 보게되어 이 憲法論爭은 成文憲法의 제정으로 종식을 보게 되었다.

2. 第1共和國 憲法(1948. 8. 15~1960. 6. 15)

第1共和國憲法은 制憲國會에서 제정되었는데, 그 起草委員會의 專門委員으로 활약하였던 兪鎭午 博士의 意見이 크게 영향을 미쳤던 것은 解放前에 유일한 公法學者이었다는 事實이 이를 말해준다.

兪鎭午 博士는 본래 그분의 政治的 所信으로 議院內閣制 政府形態로 憲法草案이 이루어졌으나 그 當時 國會議長이오 뒤에 初代大統領이 된 李承晩 博士의 강경한 반대로 憲法草案이 本會議上程 직전에 大統領制로 바뀌어졌다. 그러나 時日關係로 全般的인 大統領制로 完全 改正하기가 곤란했으므로 議院內閣制의 中心眼目인 內閣不信任權과 國會解散權을 削除하는

(1) 日本이 카이로, 포츠담宣言을 受諾하여 聯合國에 降服하였기 때문에 카이로宣言속에 韓國의 獨立이 約束되어 있으므로, 韓國의 獨立은 國際的 公約에 속한다.

것을 主軸으로 해서 大統領體制로 改正되어 本會議에 上程되고 약간의 修正을 본 뒤에 그대로 통과되었다. 그리고 基本權에 관해서도 우리나라가 近代憲法の 經驗이 없는 탓으로 그 制約을 法律에 委任하는 것을 原則으로 하였다.

우리나라의 憲法學은 위와같은 憲法을 土臺로 출발하였다. 그런데 우리나라 憲法の 解說書를 최초로 낸 분은 李昌洙氏이었다. 그 분은 公報관계에 있는 분으로 職務관계로 憲法解說書를 憲法이 公布된 직후에 出刊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 憲法에 관한 學問的 著述은 翌年인 1949年 1월에 發行한 俞鎮午 博士의 「憲法解義」라는 逐條解說書이었다. 이것이 우리나라 憲法學의 出發點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것은 憲法起草에 직접 참가하고 막대한 影響力을 발휘한 점과 그 분이 그때까지 우리나라의 憲法學者로서는 唯一無二한 先驅者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에 특기해야 할 것은 大韓民國憲法이 제정되기 직전에 俞鎮午 博士가 발표한 『國家의 社會的 機能』이란 論文이다.⁽²⁾ 오늘날 憲法學界에서 많이 論難되어 있는 國家의 社會的 機能이 主唱되어 특히 政治的 民主主義 이외에 經濟的·社會的 民主主義가 주장되었다.

다음에 第1共和國時代에 憲法에 관한 理論的 問題의 약간에 관하여 回顧해 보기로 한다.

가) 國民主權論

俞鎮午 博士는 君主主權論과 國家主權論, 또는 英國의 議會主權論을 설명 비판하면서 『人民主權은 政治思想으로서가 아니라 法律制度로서 各國憲法이 이미 承認하는 바가 되었으며, ……理論的으로도 人民主權은 충분히 설명될 수 있음에 이르러 있는 것이라』하였다.⁽³⁾

朴一慶 教授는 主權을 설명하면서 『이와 같은 現實的 法的 立場에서 吾人은 國家權力이 누구에게 歸屬하느냐의 問題 즉 所謂 主權의 擔當者 如何의 問題는 이를 어디까지나 구체적 個別的으로 認定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하여 國民主權論에 대한 확실한 態度表明이 없었다.⁽⁴⁾ 그러나 그 후에 國民主權論은 實定法的으로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여 政治的 이데올로기에 지나지 않는 概念이라는 態度를 現在까지 고수하고 있다.

韓泰淵 教授는 國民主權論에 있어서 國民을 『理念的 統一體로 이해한다는 것은 결국 國民主權의 原理는 法學的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一種의 이데올로기에 불과하다는 것의 의미』한다고 하면서 『國民主權의 原理에 관한 (憲法)規定은 實證法的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一種의 法哲學的·國家哲學的 規定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⁵⁾고 하였다.

나) 基本的人權

第1共和國憲法은 基本的人權에 관하여 대체적으로 法律留保를 原則으로 하였기 때문에

(2) 1948年 法政 3卷 3·4·6號(俞鎮午著, 憲法の 基礎理論 所收)

(3) 俞鎮午, 憲政의 理論과 實際, 1954年, 53面.

(4) 朴一慶, 憲法, 1950年, 26面.

(5) 韓泰淵, 憲法學, 1955年, 184, 185面.

形式的으로는 큰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으나, 李大統領의 長期執權으로 말미암아 점차로 獨裁政治化하였기 때문에 실제상으로는 많은 問題點이 있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違憲이라고 한 憲法判例는 거의 없으며, 다만 最高法院인 大法院의 上告權을 박탈하여 2審制로 規定한 農地改革法 및 非常事態下 犯罪處罰法의 規定이 憲法委員會에서 違憲判決을 받았다(1952.9.9 憲法委員會決定 1,2)

다) 國家權力 4機關分掌論

1957年 筆者는 「韓國憲法論」을 出刊하면서 國家權力 擔當機關으로 크게 國會·政府·法院 및 選舉人團의 4機關을 들고 각기관이 國家權力을 分掌하면서 서로 抑制·均衡을 유지한다고 하였다. 이것은 뒤에 Loewenstein의 學說에서도 보는 바로 오늘날에는 우리나라 通說을 이루고 있다.

라) 憲法改正

第1共和國憲法의 第1次改憲 즉 발췌改憲이 改憲內容의 公告가 없었다는 點에서, 또 第2次改憲 즉 4捨5入改憲이 理論上 成立될 수 없다는 點에서 違憲的 改憲이라는 것에는 學說上 異論이 없다.

마) 重要著書

第1共和國時代의 憲法에 관한 중요한 著書는 1948年의 李昌洙·大韓民國憲法大意(東邦文化社), 1949年의 兪鎮午·憲法解義, 憲法の 基礎理論(明世堂), 朴一慶·憲法講義(國民大學), 金潤根·憲法要論(育成閣), 1951年의 李垆鎬·新憲法解義(一韓圖書), 1952年의 兪鎮午·憲法入門(敎文社), 李鐘極·憲法講義, 1954年의 朴起實·憲法理論(明世堂), 朴天一·憲法概論(大志社), 1955年의 金千洙·新憲法大要(首都文化社), 韓雄吉·韓國憲法論(熙文社), 韓泰淵·憲法學(陽文社), 1957年의 尹世昌·憲法講義(章旺社), 文鴻柱·韓國憲法論(一潮閣), 1958年의 康文用·憲法(新雅社) 등이다.

3. 第2共和國憲法(1960.6.15~1961.6.6)

第1共和國憲法은 日帝로부터 獨立하여 우리나라가 現代的 立憲主義憲法을 가지게 됨에 있어서 그 性格은 自由民主主義를 基調로 하여 生活權의 基本權도 規定하고 財產權行使에 公共福利 適合性을 요구하고 있기는 하나 經濟條項의 性格은 私有財產制度를 嚴守하는 데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그러나 第2次大戰後 制定된 新生國家의 憲法으로서는 極度の 自由를 規定한 것도 아니고, 또 지나친 社會國家의 性格을 가진 것도 아니었다. 그런데 第1共和國 中葉부터 李大統領의 계속執權을 위한 違憲的 憲法改正과 아울러 政治는 獨裁化되어 1960年의 4選 選舉에서 前代未聞의 不正選舉가 敢行되자 4·19學生義舉를 보게되어 第1共和國는 붕괴되고 第2共和國이 탄생되어 自由黨의 獨裁政權에 대한 反動으로 世界에서 類例를 볼 수 없는 정도로 自由權萬能을 기조로 한 議院內閣制 體制의 憲法을 가지게 되었다.

第1共和國憲法이 全面改正되어 새 憲法이 制定되어 그 內容도 크게 달라졌으므로 憲法學

界에서는 새 憲法을 土臺로 하여 舊著의 改編作業이 進行되었다.

그리고 自由黨때 彈壓되었던 言論·出版과 學問의 自由가 完全 보장됨으로 인해서 自由權에 관한 憲法的 伸張이 극도에 도달되었다. 憲法條文 자체가 極度の 自由를 보장하고 있었으므로 憲法學 자체에서는 별로 論難이 없었다.

1948年 大韓民國이 獨立될 당시 北韓은 소련, 南韓은 美國의 傘下에 있었다. 大韓民國이 南韓에서 樹立될 당시 世界情勢는 兩極時代에 있었으며, 大韓民國은 北韓의 南侵을 생각하지 않았으며, 또 美國의 傘下에서 外侵을 방지해 주리라 믿고 있었다. 그래서 第1共和國憲法은 民主憲法의 中道를 志向한 온건한 憲法이었다. 그러나 6·25의 南侵을 맞게 되자 기대했던 대로 美國이 中心이 되어 聯合軍이 北韓의 南侵을 배격해 주었다. 이에 安心한 우리 國民들은 自由黨政府의 獨裁에만 크게 반발하여, 엄청난 腐敗와 不正選舉가 敢行되자 自由黨政權을 타도하였다. 그리하여 美國을 믿은 우리 國民은 民主主義의 先進國인 美國이나 英國보다 더 앞지른 自由萬能의 第2共和國 憲法을 제정하였다.

이 결과 無限한 自由를 배경으로 한 國民大衆은 데모에 餘念이 없었고, 兩大政黨制를 기반으로 하여야 議院內閣制의 妙味를 발휘할 수 있는데, 民主黨의 新舊派 分裂로 國會에 安定勢力을 가지지 못한 張勉內閣은 無力하기 限量이 없었다. 이리하여 第2共和國은 5·16 革命에 길을 열어 주어 第3共和國이 탄생하게 되었다.

第2共和國時代의 憲法學에서는 별다른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다. 第2共和國時代의 중요한 憲法書는 다음과 같다. 文鴻柱·新韓國憲法(法文社), 朴一慶·韓國憲法(進明文化社), 韓泰淵新憲法(法文社), 李垆鎬·新憲法要論(一韓圖書), 尹世昌·新稿憲法(一潮閣) 등이다.

4. 第3共和國憲法(1962. 12. 26~1972. 12. 27)

(1) 第3共和國憲法의 特徵

5·16 革命後 革命政府가 民政移讓을 위해 第3共和國憲法을 제정하는 過程은 良心的 態度이었다. 첫째 公法·經濟學·國際法 등 多數의 學者를 動員하였고, 또 憲法大綱을 작성하는 데도 全國 都市에 公聽會를 열어 國民의 意思를 尊重하도록 努力하였다.

第3共和國憲法을 보면, 第1共和國時代의 自由黨獨裁를 배격하고, 第2共和國時代의 지나친 自由萬能을 止揚하여 우리의 現實에 맞는 憲法을 가지려고 努力하였다. 身體의 自由, 財產權의 보장은 최대한으로 擴大하였으나, 言論·出版 및 集會·結社의 自由, 勤勞者의 權利, 公務員의 權利 등에는 우리나라 現實에 알맞게 制限할 수 있도록 憲法的 根據를 두어, 第2共和國時代의 無秩序와 混亂을 未然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學界

第3共和國 10年間이 우리나라 憲法學界에 있어서 開花期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憲法著書를 出刊한 韓泰淵·尹世昌·朴一慶·李鍾極·文鴻柱 등이 新憲法에 맞추어 憲法書를 새로 出版한 것 이외에 1963년에 姜炳斗·新憲法(修學社), 金箕範·憲法講義(法文社), 金南

辰·新憲法(三中堂), 1964년에 葛奉根·新憲法概論(普文閣), 金哲洙·憲法總覽(玄岩社), 韓東燮·憲法(向學社), 1965년에 韓相範·逐條韓國憲法(普文閣) 등이 속출하였다. 특히 1963년의 金哲洙教授의 「憲法秩序論」, 1965년의 筆者의 「基本的人權研究」, 1968년의 金道昶教授의 「戒嚴論」 등은 憲法學에 관련된 著作으로 우리나라 憲法學의 發展의 一面을 엿볼 수 있다. 그리고 새로운 憲法學者가 대개 西獨에서 研究하고 돌아온 분이었으므로 우리나라 憲法學이 西獨憲法學의 影響을 많이 받게 된 것도 否認할 수 없는 事實이다. 또 특기할 것은 第3共和國 末葉인 1969년에 韓國憲法學會가 創設되었고, 1970년에는 韓國公法學會가 創設되어 兩學會는 每年 세미나를 開催하였고 機關誌인 「憲法研究」와 「公法研究」라는 學術誌를 每年 刊行하게 되어 憲法學의 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컸다.

(3) 判 例

이 時期에 우리나라 違憲裁判史上 劃期的 判例가 損失補償과 國家賠償에 있어서 일어났다. 違憲審査의 積極主義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1967年 11月 2日의 大法院 判例는 徵發補償에 있어서 徵發法 및 그에 基因한 大統領의 徵發節次에 관한 規定은 補償을 담당하는 政府機關의 內部的 規定이며 이는 補償을 請求하는 國民에게는 効力이 없어, 國民은 憲法이 規定하고 있는 「正當한 補償」을 청구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하였다.⁽⁶⁾ 또 1972年 4月 25日의 大法院判例는 國家賠償法 2條 1項은 違憲이라 하였다. 그것은 軍人·軍屬 등이 戰鬪·訓練 기타 職務執行과 관련하여 戰死·殉職 또는 公傷을 입었을 경우에 災害補償金·遺族年金·傷殘年金을 支給받을 경우에는 그것으로 그치고 一般國家賠償請求는 하지 못한다고 規定하고 있는데, 이것이 平等權 등의 憲法規定에 위반한다고 하였다.⁽⁷⁾ 또 國家賠償法 第3條에 賠償規準을 정하여 上限線을 規定하고 있는데 이것은 賠償審議會에서의 內部的 基準이지 賠償範圍에 관한 法的 制限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⁸⁾

그리고 私法的인 損害賠償의 理論에 지나지 않으나 環境權에 관한 判例가 나왔다. 그것은 燒酒工場에서 나오는 煤煙·騒音·惡臭 등에 관한 隣接住民의 損害에 관한 것이었다.⁽⁹⁾

5. 第4共和國憲法(1972. 12. 27~)

(1) 第4共和國憲法의 特徵

1970年代에 들어서자 國際社會에 있어서 解氷期를 맞이하여 兩極時代는 사라지고 多極化時代에 突入하여 强大國은 理念보다도 國益을 위하여 弱小國家들은 내일의 運命을 가름하기 어렵게 되었다. 美國의 傘下에 安住해온 우리나라도 이에 對備하여 自主國防體制를 갖추어야 하고 또 南北對話가 시작됨에 즈음하여 國民總和가 要請되고 南北統一을 위하여 強力한 國力培養이 時急한 民族的 當面課題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指導者의 決斷에 의

(6) 1967. 11. 2 大判 67다 1334.

(7) 1972. 4. 25 大判 72다 331.

(8) 1970. 2. 24 大判 69다 1069.

(9) 1968. 11. 19 大判 68다 1522.

하여 1972年 이른바 10月維新(革命)에 의하여 領導的 大統領制를 主軸으로 하는 第4共和國憲法이 제정되었고, 이를 國民投票로써 國民은 呼應하게 되었다.

그리고 基本的人權 특히 自由權에 있어서 憲法的留保條項은 一般法律留保條項으로 變質되고 大統領權限의 強化를 基盤으로 하는 國家能率의 極大化를 制度化하였다. 그리하여 社會的 安定을 위하여 수차에 걸쳐 大統領의 緊急措置權은 발동되었고, 그 一部는 아직도 존속하고 있는 狀態이다.

(2) 學界

第4共和國憲法이 제정되자 既存學者들은 이에 맞추어 憲法書를 改筆하였다. 그리고 第4共和國憲法은 프랑스의 드골憲法에 그 原型을 찾아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프랑스의 憲法學이 導入되게 되었으며, 權力의 人格化理論이 韓泰淵·葛奉根議員의 著書에서 高調되었다. 또 兩議員이 主導하는 憲法學會에서는 每年 開催하는 세미나에서 維新憲法의 合理化理論이 展開되었다.

또 西獨의 憲法理論이 導入되어 「人間의 尊嚴과 價値」의 해석에 西獨憲法의 人格發展理論과 결부되었으며, 基本的人權의 二重構造, 基本的人權 規定의 第三者效力論에 있어서 直接適用 및 間接適用論이 주장되었다.

權寧星教授는 1976年에 「獨逸憲法論(上)」이란 力作을 발표하였고, 判例研究書에서는 金哲洙教授의 「判例教材 憲法」이 1975年에 出刊되었고, 美國憲法의 基本的人權 判例에 관해서는 筆者의 「基本的人權研究」가 舊書와 合本하여 1976年에 出刊되었다.

基本的人權에 관하여 世界的인 새 潮流에 속하는 privacy의 權利 環境權 등의 論議가 점차 活潑하게 되어 이것의 憲法學的 究明이 시작된 것은 특기할 만하다. 1977年の 公法學會 세미나에서 環境權의 憲法學的 檢討가 있었으며 그의 憲法的 근거에 대한 발표가 추후에 있었다.⁽¹⁰⁾

(3) 判例

第3共和國時代에 損失補償과 國家賠償에 관한 大法院의 違憲判決은 1976年과 1977年에 각각 전 判例를 번복하여 合憲이라고 判決하였다. 새 憲法에서는 憲法明文으로 補償의 基準과 方法에 관하여 法律로 정한다고 하였고, 國家賠償에 관하여도 軍人·軍屬 등에 관한 特例를 國家賠償法에서 規定하고 있던 것을 憲法에서 明文化하였는데, 위의 전복 判決에서는 새 憲法의 條文에는 言及함이 없이 前判例를 번복한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새 憲法의 소급 적용에 관한 法理的 問題는 야기되지 않았다.

5. 結 言

위에서 우리나라 憲法學의 30年을 개관하였다. 憲法學은 國家의 基本法에 관한 科學인데,

(10) 金哲洙·「憲法上的 環境權」, 法政 1977年 7·8號; 文鴻柱·「環境權序說」, 考試研究 1977年 9·10月號.

이 基本法이 30年間に 4次에 걸쳐 根本的으로 變遷을 보아왔다.

植民地時代를 벗어나서 自由民主主義 近代國家로서 출발하게 되자 憲法은 自由의 技術로 脚光을 받았다. 그러나 第1共和國中葉부터 自由黨의 獨裁가 심해지자 制度上으로 自由를 절대적으로 擁護하려는 心情으로 自由를 極大化한 第2共和國憲法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러나 經濟의 기초가 없고, 資本主義制度의 발달을 보지 못한 우리나라에서는 自由憲法은 社會의 혼란만을 가져와서 여기에 自由에 대한 反省과 아울러 現實과 調和하기 위한 第3共和國憲法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對外·對北·對內的으로 國家危機를 맞게 되자 이를 克服하기 위한 危機政府의 憲法을 가지게 되어 이것이 바로 第4共和國憲法이다. 自由는 대폭적으로 양보되고 大統領을 求心點으로 하는 領導的 大統領制 憲法이다.

우리 憲法學은 이와같은 빈번한 憲法의 改正으로, 참으로 安住와 冷靜을 잃은 生을 영위해 왔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나 憲法學은 現實에 지나치게 영합하지 않는 國民의 自由를 擁護해왔고, 또 權力的 지나친 肥大도 이를 억제하는 方向으로 꾸준한 努力을 해왔음은 부인할 수 없는 事實이다.

三. 展 望

國家危機를 극복하기 위한 現行憲法이 臨時憲法이나 아니면 永久憲法이나 하는 문제는 지금 論할 時期가 아니다. 왜냐하면 國家危機는 계속되고 있으며, 美軍撤收 등으로 그 緊迫性을 더해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憲法의 原型이라고 볼 수 있는 프랑스의 憲法이 처음 제정되고 시행되었던 初創期의 憲法理論이 더욱 아쉽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憲法學에 비교적 생소하였고, 그 方面의 研究가 적었던 프랑스 憲法學에 대한 研究가 앞으로 많이 기대된다. 西獨·美國 憲法에 관한 研究와 아울러 프랑스憲法에 관한 보다 진지한 研究가 기대되어 마지 않는다.